|  |  |  |
| --- | --- | --- |
| **공상총국의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공상기주자[2016]25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상사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시장주체 퇴출 매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시장 공평경쟁 촉진 및 정상적 시장질서 유지에 관한 의견>(국발[2014]20호), <국무원의 2016년 간정방권(簡政放權)•방관결합(放管結合)•서비스최적화 개혁 업무 중점에 관한 통지>(국발[2016]30호)에 근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추진 및 시장주체 퇴출 원활화 실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상사제도 개혁 심화는 당중앙•국무원이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서 새로운 형세하에 개혁을 전면 심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다. 2014년 3월 1일 이래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이 전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개혁을 통하여 권한을 시장 및 시장주체에 반환하고 기업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장의 활력 및 사회의 투자 열정을 극대화 시켰으며 시장주체 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시장 진입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강화된 반면 퇴출 통로는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다.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를 때 기업 말소 절차가 번거롭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시장 매커니즘의 효율성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이래, 일부 지방에서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퇴출 수요가 확실하고 채무관계가 명확한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자원을 재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사제도 개혁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기업 간이말소등기는 시장 퇴출 효율성 및 사회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주체의 퇴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정부 효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개혁 보너스를 방출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 추진의 중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편리성•신속성•고효율성, 공개성•투명성, 리스크 통제'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미(未)개업기업 및 무(无)채권채무기업을 대상으로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법행정(依法行政) 및 개혁•혁신을 겸찰하며 조건 적격성, 절차 간소화의 요구에 따라 등기 방식을 혁신하고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업 간이말소등기의 신청조건, 등기절차, 심사요구 및 심사기한을 공개하고 등기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의 신의성실 의무와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  2. 간이말소 행위를 규율하고 기업을 위하여 편리하고 신속하며 고효율적인 시장 퇴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존중한다.  정부 직능 전환 가속화 및 간정방권(簡政放權)의 개혁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기업의 자주권 및 자치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미(未)개업'으로 약칭)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의 청산을 완료(이하 '무(无)채권채무'로 약칭)한 유한책임회사, 비(非)회사 기업법인,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이 일반말소등기 절차 또는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국가의 규정에 따를 때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기업경영이상(異常)목록 또는 중대위법•신용불량기업명단에 편입된 경우; 지분(투자권익)이 동결되었거나 지분(투자권익)위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거나 행정강제•사법협조•행정처벌 등 상황이 있을 경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非)법인 분지기구의 말소등기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간이말소등기를 중지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를 때 말소등기 절차에 앞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간이말소등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타의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청산 결정을 내렸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은 관련 기업의 청산팀•기업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결정 또는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지참하여 피강제청산인 또는 파산인의 원(原) 등기기관에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절차를 간소화 하고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간이말소공고> 전용란을 통해 간이말소등기 신청계획 및 전체 투자자의 확약내용 등 정보를 사회에 자발적으로 공고하여야 하며(강제청산이 종결되었거나 파산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제외) 공고기간은 45일로 한다. 등기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간이말소등기의 관련 정보를 동급 세무부서•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서 등 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관된 경우 동급 상무주관부서에도 전달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정부부서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간이말소공고> 전용란의 '이의제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진술할 수 있다. 기업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기업등기기관에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를 간소화 한다. 전체 투자자의 해산 결의(결정), 청산팀의 구성, 청산팀의 확인을 거친 청산보고서 등 문서를 합병하여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전체 투자자의 기업 해산•말소 결정, 조직 및 청산 업무 완성 등 내용을 포함한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첨부 1 참조)로 간소화 한다. 기업은 간이말소등기 신청 시 <신청서>, <대표 또 공동위임대리인 위임장>,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강제청산이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결정을 제출하고, 파산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의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제출한다.), 영업집조 정본•부본만 제출하며 청산보고서, 투자자결의서, 세금청산증명, 청산팀 비안(備案)증명, 공고가 등재된 신문지 견본 등 서류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한다(기업등기신청문서규범 및 기업등기제출서류규범(2015년 버전)의 해당 부분은 이미 수정하였음)(첨부 2 참조).  등기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이말소등기 신청 기업에 대한 검색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간이말소등기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제한 조건의 규제를 받는 신청에 대하여 서면(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간이말소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기업에 대하여 등기기관은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법에 의거하여 간이말소등기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등기기관은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법에 의거하여 간이말소등기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기업은 그가 공고한 간이말소등기 신청계획 및 전체 투자자의 확약내용, 등기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는 감독관리 실시 의거이다. 기업이 간이말소등기 과정에서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말소등기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체자격을 회복시킴과 더불어 해당 기업을 중대위법•신용불량기업명단에 편입시키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업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는 민사사송을 통하여 투자자의 해당 민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법률•법규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3. 조직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제반 업무가 질서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조직의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는 조직의 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면밀하게 계획하며 직책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검찰•인력자원및사회보장•상무•세무 등 부서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업무 연결을 확실히 함으로써 제반 개혁 조치가 질서있게 전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제도•조치를 개선 및 보완한다.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은 개혁 조치 실시 평가 및 추적조사 업무를 확실하게 전개하고 이 지도의견의 구조 내에서 관련 제도•조치와 업무절차를 적시적으로 조정 및 보완한다. 시범사업을 전개하지 아니한 지방은 이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라 기업 간이말소등기 내부 업무제도 및 업무절차를 제정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고지서•처리지침 등 자료를 작성한다.  (3) 실시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는 현대 정보기술에 의탁하여 기업등기 업무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적시에 개선 및 업그레이드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및 간이말소등기 제한 조건 자동 명시 기능을 추가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와의 정보공유 업무를 차질없이 전개하며 기업 간이말소등기 시행을 위한 온라인 운영환경, 사무설비, 담당인력 및 경비 등 보장 업무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4) 업무교육을 전개한다.  각 지는 조직적•계획적•단계적으로 관련 인력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인력이 기업 간이말소등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혁사항, 서류작성규범, 내부 업무절차 등 제반 내용을 숙지하며 등기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5) 홍보 및 유도를 중요시한다.  각 지는 라디오방송•TV방송•신문•정기간행물•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에 대한 홍보 및 해석 업무를 전개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사회대중의 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대중이 기업 간이말소등기 자주 선택에 따르는 편리성과 해당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핫이슈에 지체없이 반응하고 답함으로써 전 사회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을 지지하며 개혁에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정보화 기술방안>(추후 하달)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및 기업등기 업무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선 및 업그레이드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이 지도의견을 전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점을 수집 및 취합하여 적시에 공상총국 기업등록국에 보고한다.  첨부 :  1.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  <http://www.saic.gov.cn/zwgk/zyfb/zjwj/xxzx/201612/P020170104329602394247.doc>  2. 기업등기신청문서규범 및 기업등기제출서류규범(2015년 버전) 수정 부분  <http://www.saic.gov.cn/zwgk/zyfb/zjwj/xxzx/201612/P020170104329602592312.doc>  공상총국  2016년 12월 26일 |  | **工商总局关于全面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指导意见**  工商企注字〔2016〕25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市场监督管理部门：  　　为进一步深化商事制度改革,完善市场主体退出机制,根据《国务院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国发〔2014〕20号)、《国务院关于印发2016年推进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工作要点的通知》(国发〔2016〕30号),自2017年3月1日起,在全国范围内全面实行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现就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实现市场主体退出便利化,提出如下意见:  　　一、持续深化商事制度改革,充分认识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重大意义  　　深化商事制度改革,是党中央、国务院作出的重大决策,是在新形势下全面深化改革的重大举措。2014年3月1日以来,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在全国范围内全面实施。通过改革,还权于市场、还权于市场主体,大幅度降低了企业设立门槛,极大地激发了市场活力和社会投资热情,市场主体数量快速增长。市场准入高效便捷的同时,退出渠道仍然不畅。根据现行法律规定,注销企业程序复杂、耗时较长,一定程度上影响了市场机制效率。  　　2015年以来,一些地方开展了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试点,让真正有退出需求、债务关系清晰的企业快捷便利退出市场,重新整合资源,享受到商事制度改革的红利。企业简易注销登记有助于提升市场退出效率,提高社会资源利用效率;有助于降低市场主体退出成本,对于进一步提高政府效能,优化营商环境,持续激发市场活力,释放改革红利具有重要意义。  　　各地要充分认识全面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重大意义,在坚持“便捷高效、公开透明、控制风险”的基本原则基础上,对未开业企业和无债权债务企业实行简易注销登记程序。要兼顾依法行政和改革创新,按照条件适当、程序简约的要求,创新登记方式,提高登记效率;公开办理企业简易注销登记的申请条件、登记程序、审查要求和审查期限,优化登记流程;强化企业的诚信义务和法律责任,加强社会监督,保障交易安全,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  　　二、规范简易注销行为,为企业提供便捷高效的市场退出服务  　　(一)明确适用范围,尊重企业自主权。  　　贯彻加快转变政府职能和简政放权改革要求,充分尊重企业自主权和自治权,对领取营业执照后未开展经营活动(以下称未开业)、申请注销登记前未发生债权债务或已将债权债务清算完结(以下称无债权债务)的有限责任公司、非公司企业法人、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由其自主选择适用一般注销程序或简易注销程序。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简易注销程序: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外商投资企业;被列入企业经营异常名录或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的;存在股权(投资权益)被冻结、出质或动产抵押等情形;有正在被立案调查或采取行政强制、司法协助、被予以行政处罚等情形的;企业所属的非法人分支机构未办理注销登记的;曾被终止简易注销程序的;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在注销登记前需经批准的;不适用企业简易注销登记的其他情形。  　　人民法院裁定强制清算或裁定宣告破产的,有关企业清算组、企业管理人可持人民法院终结强制清算程序的裁定或终结破产程序的裁定,向被强制清算人或破产人的原登记机关申请办理简易注销登记。  　　(二)简化登记程序,提高登记效率。  　　企业申请简易注销登记应当先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简易注销公告》专栏主动向社会公告拟申请简易注销登记及全体投资人承诺等信息(强制清算终结和破产程序终结的企业除外),公告期为45日。登记机关应当同时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将企业拟申请简易注销登记的相关信息推送至同级税务、人力资源和社会保障等部门,涉及外商投资企业的还要推送至同级商务主管部门。公告期内,有关利害关系人及相关政府部门可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简易注销公告》专栏“异议留言”功能提出异议并简要陈述理由。公告期满后,企业方可向企业登记机关提出简易注销登记申请。  　　简化企业需要提交的申请材料。将全体投资人作出解散的决议(决定)、成立清算组、经其确认的清算报告等文书合并简化为全体投资人签署的包含全体投资人决定企业解散注销、组织并完成清算工作等内容的《全体投资人承诺书》(见附件1)。企业在申请简易注销登记时只需要提交《申请书》《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授权委托书》《全体投资人承诺书》(强制清算终结的企业提交人民法院终结强制清算程序的裁定,破产程序终结的企业提交人民法院终结破产程序的裁定)、营业执照正、副本即可,不再提交清算报告、投资人决议、清税证明、清算组备案证明、刊登公告的报纸样张等材料(企业登记申请文书规范和企业登记提交材料规范(2015年版)已相应修订)（见附件2）。  　　登记机关在收到申请后,应当对申请材料进行形式审查,也可利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对申请简易注销登记企业进行检索检查,对于不适用简易注销登记限制条件的申请,书面(电子或其他方式)告知申请人不符合简易注销条件;对于公告期内被提出异议的企业,登记机关应当在3个工作日内依法作出不予简易注销登记的决定;对于公告期内未被提出异议的企业,登记机关应当在3个工作日内依法作出准予简易注销登记的决定。  　　(三)明晰各方责任,保护合法权利。  　　企业应当对其公告的拟申请简易注销登记和全体投资人承诺、向登记机关提交材料的真实性、合法性负责。《全体投资人承诺书》是实施监督管理的依据。企业在简易注销登记中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登记机关可以依法做出撤销注销登记等处理,在恢复企业主体资格的同时将该企业列入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并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有关利害关系人可以通过民事诉讼主张其相应权利。  　　对恶意利用企业简易注销程序逃避债务或侵害他人合法权利的,有关利害关系人可以通过民事诉讼,向投资人主张其相应民事责任,投资人违反法律、法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三、加强组织保障,确保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各项工作的有序开展  　　(一)加强组织领导。  　　各地要切实加强组织领导,周密安排部署,明确职责分工,注重加强与法院、检察、人力资源和社会保障、商务、税务等部门信息沟通,做好工作衔接,确保改革各项举措的有序开展、落地生根。  　　(二)完善制度措施。  　　已经开展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试点的地方,要做好改革举措实施评估和跟踪调查工作,在本指导意见框架下及时调整完善相关制度措施和工作流程。尚未开展试点的地方,要认真按照指导意见要求制定企业简易注销登记内部工作制度和工作流程,编制企业简易注销登记告知单、办事指南等材料。  　　(三)强化实施保障。  　　各地要依托现代信息技术,及时改造升级企业登记业务系统软件,增加企业简易注销登记和简易注销登记限制条件的自动提示功能,完善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相应功能,做好与有关部门的信息共享工作,切实强化实行企业简易注销登记的网络运行环境、办公设备、经办人员以及经费等保障工作。  　　(四)开展业务培训。  　　各地要有组织、有计划、分步骤开展对相关人员的业务培训,帮助相关人员深入理解企业简易注销登记的意义,全面掌握有关改革具体规定、材料规范、内部工作流程,熟练操作登记软件,为改革的全面实施打好基础。  　　(五)注重宣传引导。  　　各地要充分利用广播、电视、报刊、网络等各种媒介做好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宣传解读,提高政策知晓度和社会参与度。引导公众全面了解自主选择企业简易注销登记带来的便利和对应的责任,及时解答和回应社会关注的热点问题,努力营造全社会理解改革、支持改革、参与改革的良好氛围。  　　请各地按照《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信息化技术方案》(随后下发)做好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和企业登记业务系统软件的改造升级,确保2017年3月1日起全面执行本指导意见。各地在实行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中遇到的新情况、新问题,要注意收集汇总,及时上报总局企业注册局。  附件:  1. 全体投资人承诺书  <http://www.saic.gov.cn/zwgk/zyfb/zjwj/xxzx/201612/P020170104329602394247.doc>  　　2. 企业登记申请文书规范和企业登记提交材料规范（2015年版）修订部分  <http://www.saic.gov.cn/zwgk/zyfb/zjwj/xxzx/201612/P020170104329602592312.doc>  工商总局  2016年12月26日 |